

# 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 퇴·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 퇴·액비화 적용기준

- 퇴비화 기준 >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퇴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함
- 액비화 기준 > 돼지·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액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함

### |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시기

종류	항목	기준	시행일
모든가축	부숙도	1,500㎡ 이상/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3.25*
		1,500㎡ 미만/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15.3.25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젖소	염분	2.5% 이하	

\*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 참고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 ① 부숙중기 >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② 부숙후기 >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③ 부숙완료 >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 | 액비의 부속도 적용기준 및 시기

종류	항목	기준	시행일
돼지-젖소	부속도	부속완료	허가 '17.3.25*
			신고 '19.3.25**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15.3.25
	구리	70mg/kg 이하	
	아연	170mg/kg 이하	
염분	2.0% 이하		

※ 액비화 기준 중 부속도 기준

\*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 2017년 3월 25일

\*\*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 2019년 3월 25일

## 2 퇴·액비화 검사기관 신청방법

## 시료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

- 농사로(www.nongsaro.go.kr)-농자재-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현황에서 업데이트된 최신 시험연구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
-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



## | 성분검사용 시료채취방법

**퇴비**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그림의 방법으로 채취



**액비** 액비는 2~3회 교반 후 충분히 혼합한 상태에서 그림의 채취방법으로 채취



**성분검사 주기**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

**반드시 기억하세요**

-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
-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 시료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도를 20℃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퇴·액비 성분분석 결과지 3년간 보관

**3 퇴·액비 관리대장**

**|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방법**

- ①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기재
- ②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기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5. 3. 25>

가축분뇨 및 퇴·액비관리대장

□업체명 : \_\_\_\_\_ □가축의 종류 : \_\_\_\_\_

일자	가축분뇨 자가처리내역			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				퇴·액비관리내역			액비 살포내역		
	종류 (분/요/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m <sup>3</sup> /일)	종류 (분/요/분뇨)	위탁량 (m <sup>3</sup> /일)	위탁 운반 업체명 (차량 번호)	위탁 처리 업체명	종류 (퇴비/액비)	생산량 (톤/일)	처분량 (톤/일)	액비 살포자 (차량 번호)	살포지 소재지	살포량 (톤)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후 3년간 보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시 과태료**

- 퇴·액비 기준 위반 시 벌칙조항 (가축분뇨법 제53조 제3항16호)

과태료 50만 원(1차) / 70만 원(2차) / 100만 원(3차)

**4 퇴·액비 성분분석 위반시 벌칙조항**

**| 퇴·액비자가처리능가 퇴·액비의 성분분석 의무화**

- 퇴·액비 기준 위반 시 벌칙조항 (가축분뇨법 제53조 제3항16호)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허가대상	기준치 1.1배 미만	가축분뇨법 제53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1.1배 이상 1.3배 미만		150	200	300
	1.3배 이상 1.5배 미만		200	300	400
	1.5배 이상 2.0배 미만		400	600	800
	2.0배 이상		600	800	1,000
	부속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신고대상	1.1배 미만	제53조 제2항제1호	50	70	100
	1.1배 이상 1.3배 미만		70	100	150
	1.3배 이상 1.5배 미만		100	150	220
	1.5배 이상 2.0배 미만		200	300	400
	2.0배 이상		300	400	500
	부속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